

사)대한피구연맹 피구 심판 자격 관리운영규정

2016. 03. 12. 제정
2016. 06. 10. 시행
2016. 09. 24. 개정
2017. 01. 21.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규정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피구연맹 (이하 "연맹"이라 한다) “피구심판 자격 관리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피구연맹에서 시행하는 피구심판의 1, 2, 3급, 상임의 자격검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자격 관리운영) 자격 관리운영은 연맹 정관 제 3 조에 규정하는 조직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평생 스포츠 및 경기 스포츠로 오랫동안 도전 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여 심판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피구 기술 발전과 보급에 이바지한다.

제 4 조 (자격 관리운영의 의의) 자격 관리운영은 스포츠로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유아에서 성인까지 평생 스포츠로서의 피구 동호인의 확대와 심판을 배출하여 향상된 피구 교육을 전국에 전파하는데 의의가 있다.

제 2 장 개요

제 5 조 (정의)

1. 심판이라 함은 본 연맹에서 발급하는 1, 2, 3급, 상임 자격증을 취득하고 연맹의 규정과 방침에 따라 각종대회에 심판으로서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제 6 조 (응시 자격)

1. 심판 자격 응시 대상자는 심판 자격을 취득하고,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

① 3급

- (1) 일반인, 교사, 그 밖의 체육관련 종사자(고졸이상 20세이상 주민등록 발급된 자)
- (2) 피구에 관한 깊은 관심으로 동호회 또는 피구교실(클럽) 운영을 원하는 사람
- (3) 피구 심판 자격을 가지고 활동하기를 원하는 사람

② 2급

- (1) 연맹 공인 3급 심판 자격을 득한 후 1년6개월이 지난 심판으로 꾸준히 활동하며

연맹이 주관하는 보수교육 또는 강습을 3회 이상 이수한 사람(고졸이상 20세이상 자)

- (2) 피구의 보급 및 심판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며 연맹이 개최한 대회에 심판으로 참여하고, 심판경력 5회 이상으로 연맹에 등록이 된 사람
- (3) 연맹의 운영상 필요에 의해 연맹에서 자격을 인정한 사람

③ 1급

- (1) 심판으로 3년 이상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 2급 심판 자격을 취득한지 2년이 경과하고 매년 연맹이 주관하는 보수교육(필수이수과정 포함) 및 강습에 2회 이상 이수한 사람 (고졸이상 30세 이상자)
- (2) 심판으로 3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 2급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지 2년이 경과하고 심판으로 활동한 심판경력 10회 이상으로 연맹에 등록이 된 사람
- (3) 연맹의 운영상 필요에 의해 연맹에서 자격을 인정한 사람

④ 상임

- (1) 1급 심판으로써 5년 이상 심판으로 활동하고 연맹에서 실시하는 강습회 및 심판 교육에 10회 이상 참여하여 심판 지도방법을 습득한 사람(고졸이상 40세 이상자)
- (2) 연맹의 운영상 필요에 의해 연맹에서 자격을 인정한 사람

제 7 조 (자격 기준) 연맹의 심판에 대한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3급

- (1) 연맹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자격검정을 거쳐 3급 심판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2급

- (1) 연맹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자격검정을 거쳐 2급 심판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 2급 심판은 3급 심판을 지도할 수 있으나, 심판을 양성할 수 없다.

3. 1급

- (1) 연맹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자격검정을 거쳐 1급 심판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 1급 심판은 2급, 3급 지도자 및 심판을 지도할 수 있으나, 심판을 양성할 수 없다.

4. 상임

- (1) 1급 심판으로써 5년 이상 심판으로 활동하고 연맹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심판법을 습득한 사람으로 연맹에서 상임 자격을 부여한 사람으로 심판을 양성할 수 있다.

제 8 조 (자격의 개요) 연맹이 실시하는 자격의 개요는 다음 각 호의 같다

- 1. 피구의 이론 및 실기 심판법을 중심으로 심판으로서의 인성과 매너, 경기 진행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함을 중시한다.
- 2. 자격은 심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한다.
- 3. 자격은 급수별 방식에 의한 인증 시스템으로 한다.
- 4. 심사 방식은 개인의 지식과 실기에 관한 평가를 한다.

제 9조(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① 심판자격증은 “피구에 대한 지식 및 활용능력으로 피구분야의

(심판,대회운영,사무,교육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② 등급별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등급	등급별 직무내용
피구 심판	상 임	1. 1,2,3급 심판 직무내용전부 2.대한피구연맹의 모든사업및 중앙연맹대회의 총괄책임자가 가능하며 대한피구연맹의 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할수 있다.
	1급	1. 2,3급 심판 직무내용전부 2. 대한피구연맹의 모든대회및 지역 시도피구연맹대회의 피구심판및 심판 보수교육지도 가능하며 대한피구연맹의 심판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할수 있다.
	2급	1. 3급 심판 직무내용의 전부 2.대한피구연맹의 모든 대회및 타 지역의 피구심판으로 활동이 가능함.
	3급	심판 3급은 대한피구연맹의 규정과 방침에 따라 해당지역피구심판으로 활동할수 있다.

제 3 장 자격시험

제 10 조 (검정기준) 자격검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자격종목	등급	검정기준
피구 심판	상 임	피구심판을 양성할수 있으며 최고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피구대회진행능력 과 피구 심판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분과총괄 운영 책임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최고급 수준
	1급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피구 심판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피구 심판 책임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최고급 수준
	2급	준전문가 수준의 피구 심판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피구 심판 책임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
	3급	일반인으로써 뛰어난 피구 심판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피구 심판 수준이 상급 단계에 도달하여 한정된 범위내에서 피구 심판 수행 할 기본 능력을 갖춘 상급 수준

1. 3급 자격시험은 연맹에서 실시하는 자격강습회시 필기 및 실기시험으로 진행한다.
2. 2급 자격시험은 3급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 선심과 부심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주심을 도와 경기진행을 능률적으로 이끌며, 부심의 동작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피구의 심판 지식과 실기 등에 대해 매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연맹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단, 연맹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강습, 대회에 3회 이상 참가해야 한다.

3. 1급 자격시험은 2급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 주심과 부심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경기를 지배하여 진행하는지를 확인한다. 이의제기 시에 상황대처능력을 시험한다. 피구의 전문적인 지식과 실기 등에 대해 매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단, 1급은 국가시험에 준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필요에 따라 연맹에서 실시할 수 있다.

4. 상임은 1급 심판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심판법 및 대회 운영 및 진행방법, 피구의 발전방향등에 관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연맹에서 실시하는 대회 및 각종 세미나와 교육에 10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연맹에서 실시할 수 있다.

5. 시,도연맹에서 연맹의 승인 없이 자격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자격시험 대상자의 자격을 취소하고, 시험을 시행한 시도 연맹의 관계자는 해임하며, 영구히 자격을 박탈한다.

제 11 조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1. 자격검정방법 및 검정과목은 연맹 심판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아래 항목은 반드시 실행하여야 한다.

등급	검정방법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1,2,3급	필기	객관식/주관식	심판이론
	실기	신체적 활동	심판법 실기
1,2급	기타	구술 및 면접	피구 심판법 구술 및 면접
상임	기타	논문발표	논문발표(심판법, 대회운영 방법, 피구의 발전방향)

2. 각 항목별 평균 70점 이상이 되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3. 상임은 연맹에서 논문발표(심판법과 대회운영 방법, 피구의 발전방향등)와 경력을 검토하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 12 조(수험자 확인) 감독위원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시험시간마다,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수시로 원서부분과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과 수험표를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13 조 (응시료 및 신청비용) 자격시험 응시료 및 신청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하는 신청서와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자격시험에 합격한자는 합격공고가 발표된 당일부턴 그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 4 장 자격시험 및 검정위원

제 14 조 (자격시험 및 검정위원) 자격시험위원 및 심사를 맡은 검정위원은 다음과 같다.

1. 1급 및 상임 자격을 보유한 자격자로 한다.
2. 시,도연맹에서 전국대회를 하고자 할때에는 반드시 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연맹에서 파견한 상임에 의하여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
3. 검정위원은 시험에 따른 평가서를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 조 (자격검정 담당)

연맹은 검정관리위원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검정기획담당, 채점담당, 검정관리 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제 16 조 (검정조직의 업무분장)

검정관리팀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① 검정기획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2. 원서접수·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기술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4. 검정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검정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국가기술자격검정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② 출제·채점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검정의 필기·실기 시험문제의 출제, 관리 및 인쇄에 관한 사항
3. 채점 및 합격발표에 관한 사항

③ 검정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서접수·시험장소 및 응시자 본인의 신분증대조확인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2. 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3. 검정의 집행(수험원서 접수, 감독위원등의 배치, 시험장 설치, 검정 시행 등)에 관한 사항
4. 자격취득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 5 장 자격증의 교부 및 등록

제 17 조 (등록) 공인의 등록은 다음과 같다.

1. 연맹은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연맹은 시,도연맹의 요청에 따라 시,도지역에 소속된 명단을 시,도연맹에 전달할 수 있다. 단, 반드시 공문으로 요청해야하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시,도연맹은 요청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제 18 조 (자격증의 교부) 자격증의 교부는 다음과 같다.

1. 연맹의 자격증은 연맹의 직인이 반드시 들어간 자격증이어야 한다.
연맹은 시험을 실시한 후 1개월 이내에 합격자 자격증을 발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2. 자격증에는 합격자의 사진이 첨부되어야 하며, 사진은 6개월 이내의 반명함이어야 한다.

제 19 조 (자격증의 갱신) 자격증의 갱신은 다음과 같다.

1. 자격증의 갱신은 취득한 날로부터 만 4년이 경과되기 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자격갱신 발급을 위한 절차로 지도경력 및 심판경력 등 활동 경력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2. 2016년 6월10일 이전(구)국민생활체육전국피구연합회)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절차에 따른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갱신 재발급한다. 발급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단, 2017년 1월1일 이후 갱신 자격증 발급은 연맹이 주최, 주관하는 교육을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갱신 일자 는 교육을 이수한 날짜로 한다.

제 20 조 (등록 기간 및 갱신) 등록 기간과 갱신은 아래와 같다.

1. 심판 등록은 매년 1월 1일부터 1월31일까지 연맹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시 자격증 사본, 심판경력,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맹은 연맹의 사업과 운영의 필요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줄 수 있다.
3. 연맹은 등록 신청을 한 순서와 급수에 따라 심판을 우선 배정하며, 필요시 승급의 혜택을 줄 수 있다.
4. 자격갱신은 매해년도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하며, 갱신 시의 비용은 별도로 정한다.
단, 연맹의 운영과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 갱신을 할 수 있다.

제 21 조 (자격의 유효기간)

심판 자격은 취득 시부터 4년간 유효기간을 두며 자격취득자는 유효기간 만료시 자격갱신 신청을 하여야하고 대한피구연맹은 자격취득자가 자격갱신 신청을 요청할 시 자격증을 갱신 해주어야 한다. 단, 갱신기간 중 연맹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수교육 및 강습회, 세미나에 1회 이상 참여한 사람으로 한다.

제 6 장 강습회

제 22 조 (강습회) 연맹에서 실시하는 각종 강습회는 연맹의 정관에 따라 심판연수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한다.

제 7 장 자격 취소

제 23 조 연맹은심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한다.

1. 응시 자격 신청서에 허위 기재가 있을 경우
2. 연맹 회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행위가 있었을 경우
3. 연맹의 정관, 규정 등에 위반이 있는 경우
4. 연맹의 방침 결정에 위배하는 경우

부 칙

제 1조(시행 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6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국민생활체육전국피구연합회에서 시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7.01.21)

제 1조(시행 일) 이 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